

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발급, 전송·송부 동의서

환자 본인	성 명	생년월일
	연락처(전화번호) (전자우편주소)	
	주 소	
신청인	성 명	환자와의 관계
	연락처(전화번호) (전자우편주소)	생년월일
	주 소	
동의 내용	01. 열람 [] / 02. 사본 발급 [] / 03.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전송·송부 [] (동의할 사항 []에 “√” 표시)	
	의료기관 명칭	전송·송부 받을 의료기관 명칭(진료기록 전송·송부의 경우만 적습니다)
	진료기간	
	발급(전송·송부) 사유	
	발급(전송·송부) 범위(환자 본인이 직접 적습니다)	
	예시) 진료기록부 사본, 처방전 사본, 수술기록 사본,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, 방사선 사진(영상물 포함), 간호기록부 사본, 조산기록부 사본, 진단서 사본,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	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은 위 신청인()이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·제2항 및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위의 동의 내용과 같이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, 사본 발급 또는 전송·송부를 요청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이
이
이

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 (서명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
수임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위임인과의 관계	
	주 소			
위임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 소			

유의사항

다른 사람의 허위서명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.

※ 구비서류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

위임인은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「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임인

(자필서명)

삼육부산병원장 귀하